

2003. 6.

條例案審查報告書

- 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
-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產業建設委員會

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및운영조례안	2003.6.11	2003.6.11	2003.6.12	2003.6.12	지역경제 과장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2003.6.7	"	"	"	도로과장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 조례안	"	"	"	"	교통과장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가) 제안이유

-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충주시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업무 및 기능(안 제3조)

- 근로자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 이용 및 시설사용(안 제4조 내지 제10조)

- 복지관의 이용 및 시설사용 허가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비용의 납부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운영(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가) 제안이유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고 2003. 1.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도시지역의 도시계획과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통합하여 시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청회·주민의견청취 방법을 정해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고 매수불가 토지에 행위허가 범위를 정함(안 제12조, 안 제14조)
-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허가대상 및 절차,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함으로서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방지 및 허가의 적정성과 투명성 제고
(안 제18조 내지 안 제30조)

- 세분된 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환경보호는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국토 이용 및 도시발전 도모(안 제31조 내지 안 제53조)
- 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정하여 도심지 과밀화 방지 및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 유도(안 제54조 내지 안 제62조)

다.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

가) 제안이유

- 충주시 교통수요관리 및 기타 주요 교통정책 방향 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는 교통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3조)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으로 함(안 제8조)

라.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 제안이유

-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견인료가 낮아 견인대행업을 기피하므로서 인근시(제천, 청주)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불법주차에 대한 견인대행업의 활성화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통지서에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 기준을 명시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함.

나) 주요골자

- 불법주차 견인료 인상 조정

- 2.5톤 미만 :	20,000원 ⇒ 30,000원
- 2.5톤 이상 ~ 6.5톤 미만 :	25,000원 ⇒ 35,000원
- 6.5톤 미만 :	40,000원 ⇒ 50,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충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가 필요하다 하겠음.
- 본 조례안중 불필요한 유사조항[안 제5조(이용제한)과 안 제8조(시설 사용 제한 및 허가)]은 없는지, 명확하지 않은 권한만 부여된 조항(안 제9조제3항, 안 제8조제4항 등)은 없는지, 근로자를 위한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체가 운영의 원칙이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됨.

나.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 충주시도시계획조례는 2000. 11. 23일 조례 제494호로 공포하여 운영하던중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2003. 1. 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도시계획조례를 전면 새로운 안으로 부의하게 되었음.

- 새로운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과 비도시 지역의 국토 이용계획의 통합수립과 주민의견을 대폭 수렴하게 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방지 등이 특징이라 하겠음.
- 따라서 기 각계 각종의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 도시계획위원회 및 충청북도 관계공무원의 토론 등으로 수렴된 36건의 의견중 21건이 반영되고, 6건이 수정되었으며, 법제안 등의 사유로 9건이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폭넓고 많은 시정이 요구 되었음.
- 그러나 도시계획 및 설계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이익과 대치되는 일면도 일부 있고, 법령의 기준과 조례안의 기준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규제와 완화에 대하여 심도있고 심층적인 토론이 요구됨.

다.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

-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은 충주시 주요교통정책에 관한사항 등 교통시책개선, 택시면허 공급의 범위 및 부제조정, 기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음.
-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이해 관련자간 구성비율과 전문성 및 시민대표성이 있는 관련 단체 등 시민의 의사가 반영 될 수 있는 자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됨.

라.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2000년 1월 19일 조례 제458호로

공포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견인료가 낮아 대행업자가 경영악화로 견인대행을 기피하여 견인료 인상으로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 하다 하겠음.

- 자동차 견인료 인상안을 시민에게 충주시보, 반상회보(예성 신문)등 각종 언론을 통하여 사전 홍보하여 다른 의견제시는 없으나 대폭적인 견인료 인상이 시민 부담은 없는지, 대행업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하여 대안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 질의 : 자치센터로 계획된 1층에 대하여 동사무소 신축후의 계획은?
- 답변 : 자치센터와 동사무소로 쓰기에는 협소하므로 동사무소 신축시 옮겨갈 계획이며, 그 이후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나.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 ▶ 질의 : 안 제43조 일반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2층이상으로 조정한 것은 더욱 강화한 것은 아닌지?
- 답변 : 당초 3층 이상만 가능했던 것을 소자본가들이 많은 지역현실 등을 감안하여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완화한 것임
- ▶ 질의 : 안 제38조 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에서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를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 이유는?
- 답변 : 자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의 종세분에 있어 도조례에 세분이 안되어 있어 입법예고시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다.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

▶ 질의 : 없음

라.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질의 : 견인업체의 수지타산을 위한 견인료 인상 보다는 강도 높은
지도, 단속 등의 행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 답변 : 견인료가 현실적이지 못하여 업체가 견인을 꺼려하므로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5. 심사결과

-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 수정의결
-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 수정의결
-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 : 원안가결
-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6. 붙 임

-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1부
-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1부
-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 1부
-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호 및 안 제8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9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2. (생략) <u>3. 기타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u>	제5조(이용의 제한) ----- ----- ----- 1.-2. (제정안과 같음) (삭제)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및 허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3. (생략) <u>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u>	제8조(시설사용의 제한 및 허의 취소 등) ----- ----- ----- 1.-3. (제정안과 같음) (삭제)
제9조(사용료) ①-② (생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2. (생략) <u>3.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	제9조(사용료)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 ----- ----- 1.-2. (제정안과 같음) 3.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별표 13】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제4호중 “제1호라목” 을 “영 별표14 제1호라목” 으로 한다.

안 【별표 21】 중 “나목 및 다목” 을 “제2호 및 제3호” 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3호 관련) 1. (생략) 2.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u> <u>(기숙사, 아파트를 제외한다. 다만,</u> <u>기존아파트의 증·개축은 가능함)</u> 3. (생략)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로서 <u>제1호라목</u>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9. (생략)	[별표 13] ----- ----- 1. (제정안과 같음) 2. <u>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u> <u>(기숙사를 제외한다)</u> 3. (제정안과 같음) 4. ----- ----- 영 <u>별표14 제1호라목</u> ----- 5.-9. (제정안과 같음)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1호 관련)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으며, <u>나목</u> 및 <u>다목</u> 의 경우 정화시설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5. (생략)	[별표 21] ----- -----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으며, <u>제2호</u> 및 <u>제3호</u> -----] 1.-5. (제정안과 같음)